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509883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변론 종결2020. 5. 19.

판결 선고2020. 7.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047,241원 및 그 중 16,765,300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3. 2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7.8/110.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4. 체결된 증여계약을 19,712,69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9,712,6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6. 11. 4. 피고 A과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A을 피보증인으로, 신용보증원금을 19,550,000원(이후 16,575,000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간을 2016. 11. 4.부터 2017. 11. 3.까지(이후 2018. 11. 2.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A은 장차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④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2018. 11. 3.경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1. 1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16,765,300원(= 원금 16,575,000원 + 이자 190,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대지급금)은 218,961원이고, 위약금은 62,980원이다.

3)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2018. 9. 4. 아들인 피고 B과의 사이에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5. 접수 제135486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3. 접수 제30903호로 채무자는 피고 A,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1.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 합계액 17,047,241원 (= 대위변제금 16,765,300원 + 대지급금 218,961원 + 위약금 62,9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765,3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1. 15.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3.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지 약 2개월 만에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9. 1. 15.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A의 채무초과 여부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72,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예금 21,015,249원 및 보험해약환급금 8,621,910원 합계 29,637,159원만을 소유하였고, 소극재산으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19,500,000원, D은행 신용대출 3,108,000원, E카드대출 9,647,000원 합계 32,255,0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제공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은 피고 A이 처인 F에게 재산분할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F이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송파구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72,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는 위 거래가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C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000,000원, 전세보증금이 3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17,000,000원(= 172,000,000원 - 20,000,000원 - 36,000,000원)이다. 한편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9,712,693원(= 17,047,241원 + 2,665,452원(16,765,300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3. 2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인 2020. 5.

19.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19,712,693원이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19,712,6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712,6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연주

별지